

서울교육대학교와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과의 교육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협력 협정서

서울교육대학교 (이하 “서울교대”라 한다)와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이하 “인제대 교육대학원”이라 한다)은 교육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제반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제 1 조 목적

본 협정서는 서울교대와 인제대 교육대학원 간에 교육전문가의 양성과 관련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양 기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 협력의 분야

본 협정서에 대한 두 기관의 상호 협력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교육학술 관련 연구 및 행사의 공동 추진
2. 인적자원개발 연수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및 운영
3. 학생 및 교수의 상호 협의된 시설물에 한정해 상호 이용
4. 교원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강사 지원
5. 방과후 학교 대학원생 멘토링제 운영
6. 기타 상호 협력에 필요한 사항

제 3 조 비용의 부담

서울교대와 인제대 교육대학원은 업무협력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등을 상호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제 4 조 보 안

본 협정서에 의하여 교환되는 비밀정보, 문서는 양 당사자 간에 적절한 보안조치를 하여 외부누출을 제한하며, 공개 필요시 서면동의하에 진행하기로 한다.

제 5 조 협정의 변경 및 해지

1. 양 기관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협정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본 협정서의 개정은 당사자간 서면 합의로 가능하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어느 일방이 60일 이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협정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① 본 협정의 중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 ② 공동 협력사업 평가결과 협력실적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 ③ 기타 양 기관 협력사업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제 6 조 효력 및 유효기간

1. 본 협정서는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상호 협의에 의하여 협정 내용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2. 별도의 서면 통보가 없으면 협정은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계속 유효하다.

제 7 조 기 타

본 협정서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세부사항은 양 기관의 별도 협의 하에 정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0년 7월 28일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송 광 용

송 광 용

인 제 대 학 교
교육대학원장 서 민 원

서민원